

# 주식회사 에이치엘클레무브

## 정 관

### 제1장 총 칙

#### 제1조 (상 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에이치엘클레무브"라 하며, 영문으로는 "HL Klemove Corp."(으)로 표기한다(이하 "회사"라 한다).

#### 제2조 (목 적)

회사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능동형 및 수동형 운전자 보조시스템의 응용엔지니어링, 생산 및 판매업
- (2) 자동차샤시 전장품의 개발, 응용엔지니어링, 생산 및 판매업
- (3) 자동차 센서의 개발, 응용엔지니어링, 생산 및 판매업
- (4) 기타 자동차 부품의 개발, 응용엔지니어링, 생산 및 판매업
- (5) 전자 소비재의 개발, 응용엔지니어링, 생산, 판매 및 유통업
- (6) 자동차부품의 설계, 조립, 제조, 공급 및 판매업
- (7) 전기자전거 및 부품 제조, 판매업
- (8) 데이터 분석, 제공 및 관련 서비스업
- (9)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시스템 개발, 제조, 공급,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 (10) 일반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 (11) 로봇 및 관련 부품과 자동화 설비 제조, 공급, 판매업 및 관련 서비스업
- (12) 아이티(IT)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임대업

(13) 통신 판매업

(14)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 수출 및 수입업, 무역 대행업

(15) 부동산 임대업

(16) 위 각 호와 관련된 사업 및 투자업

### 제3조 (본점의 위치 및 지점의 설치)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및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공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www.hlklemove.com)게재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 제5조 (주식의 총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는 일천오백만(15,000,000)주로 한다.

(2)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십만(200,000)주로 한다.

### 제 6 조 (주식의 종류 및 액면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오천(5,000)원으로 한다.

### 제7조 (주 권)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오천주권, 일만주권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각 주주별로 그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 총수를 표창하는 하나의 주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제7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 제 8 조 (신주의 발행)

(1) 회사는 수권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될 수 있으며, 신주의 발행조건은 당해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한다.

(2)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비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 또는 주주 중 일부(주주에게 그가 소유한 주식수의 비율과 다르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함)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가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9 조 (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

위는 이사회에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제 10 조 (주권의 재발행)

- (1) 주권의 파손,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으로 주권을 재발행 받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가 규정한 양식을 주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권파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식별할 수 없거나 주권을 분실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기존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의 정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주권재발행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성명, 주소, 인감 등의 통지)

- (1) 주주와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통상 서명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감을 대신하여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주주와 등록질권자의 법정대리인은 대리인 지정에 관한 충분한 법적 증거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4) 본 조 준수와 관련하여 회사는 주주와 등록질권자의 실수 또는 부주의에 의한 손실이나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 (1) 회사는 매 회계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주주명부의 기입, 질권의 기입이나 말소, 신탁의 설정이나 말소)을 정지한다.
- (2) 회사는 매 회계년도 말일에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2 주간 전의 통지를 한 이후,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 제 3 장 사채

### 제 13 조 (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 제4장 주주 총회

### 제14조 (개 최)

- (1)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집한다.
- (2) 주주총회의 소집 일시 및 장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다른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 (3) 모든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되고,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 (4)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2 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의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다. 다만, 위 기간은 당해 주주총회 이전에 모든 주주로부터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 혹은 생략될 수 있다.
- (5)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참석여부를 불문한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제15조 (의 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의장이 된다.

#### 제16조 (투 표)

- (1) 모든 주주는 그 명의의 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집중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제17조 (의사정족수 및 결의방법)

- (1) 주주총회(정기 주주총회 및 임시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이르는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함으로써 성립한다.
- (2)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모든 조치 및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 제18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주주총회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회 및 감사

#### 제19조 (이사와 감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고, 회사의 감사는 1 인 이상으로 한다.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20조 (임 기)

(1)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개시되며,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에 만료된다.

#### 제21조 (결 원)

(1) 이사와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다.

(2)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2조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

(1) 회사는 1 인의 대표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는 사장이라는 직함이 부여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회는 그 결의에 따라 기타 임원에게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3조 (감사의 의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외에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고 수행한다.

(2) 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4) 감사의 검토의견의 주요내용과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감사는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5 일 이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생략하거나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단,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5) 이사회는 본점, 혹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다른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6)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25 조 (의사정족수 및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동법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제 26 조 (의사록)

모든 이사회 주요내용은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 의사록은 의장과 참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혹은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 27 조 (보 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결의로 채택된 이사 및 감사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 27 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1)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는 3 배)를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법 제 414 조에 따른 감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장 회사의 계산

### 제 28 조 (회계년도)

이사회에서 다른 결정이 없는 한,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단, 첫 회계년도는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제 29 조 (재무제표)

(1) 대표이사는 매년 다음의 서류(총괄적으로 "재무서류"라 한다.)를 준비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전에 감사에게 제출한다.

(a) 대차대조표

(b) 손익계산서

(c)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d) 위 (a), (b), (c)항의 세부명세서

(e) 영업보고서

(2) 감사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서류"를 수령한 후, 정기 주주총회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전까지 "재무서류"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3) 대표이사는 감사를 받은 "재무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한다.

(4) 회사는 "재무서류"와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 주전부터 5 년 동안 본점에, 그 등본을 3 년동안 지점에 각 비치한다.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재무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9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0 조 (이익의 처분)

주주총회 결정사항 및 대한민국 관련법에 따라 이익을 처분한다.

#### 제 31 조 (배 당)

- (1) 회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충족시킨 후 이익을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 (2)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선언되며, 매 회계연도 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질권자들에게 지급된다.
- (3)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결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배당선언 이후 1 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 (4)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5) 본조 제(4)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배당금은 회사로 귀속된다.

#### 제 31 조의 2 (중간배당)

- (1) 회사는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2)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장 기타 사항

### 제 32 조 (관련법)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한민국 상법 및 다른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제 33 조 (내부규정)

회사는 이사들의 결의를 통해, 회사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 및 세부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 조 (효력 발생일)

이 정관은 2009 년 4 월 10 일 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 조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 3 조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10 월 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 4 조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3 월 2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 5 조 (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5 월 1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